2021년 9월 도시가스(도매요금 조정) 소비자 요금 조정내역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구분			현행(8월)			조정(9월)			증감 (D'-D)	증감률 ((D'-D)/D)	비고
			도매요금 (A)	소매공급 비용(B)	소비자요금 (D=A+B)	도매요금 (A')	소매공급 비용(C)	소비자요금 (D'=A'+C)			
주택용	기본요금 (원/월, 가구)			840	840		840	840	0	0.00%	
	취사		12.9284	1.5094	14.4378	12.9284	1.5094	14.4378	0	0.00%	
	난방		12.9284	1.5465	14.4749	12.9284	1.5465	14.4749	0	0.00%	516MJ 까지는 취사요금 적용
업무난방용			15.6730	1.7864	17.4594	16.5311	1.7864	18.3175	0.8581	4.91%	
일반용	영업1	동절기	11.5323	2.9581	14.4904	11.5323	2.9581	14.4904	0	0.00%	○ 계절요금 적용기준 - 동절기 : 12월~3월 - 하절기 : 6월~9월 - 기타월 : 4,5,10,11월
		하절기	11.2514	2.9581	14.2095	11.2514	2.9581	14.2095	0	0.00%	
		기타월	11.2700	2.9581	14.2281	11.2700	2.9581	14.2281	0	0.00%	
	영업2	동절기	11.5323	1.7864	13.3187	11.5323	1.7864	13.3187	0	0.00%	
		하절기	11.2514	1.7864	13.0378	11.2514	1.7864	13.0378	0	0.00%	
		기타월	11.2700	1.7864	13.0564	11.2700	1.7864	13.0564	0	0.00%	
냉방용 공조용	동절기		15.1195	1.7864	16.9059	15.9776	1.7864	17.764	0.8581	5.08%	12월~3월
	하절기		8.9799	1.1045	10.0844	9.6235	1.1045	10.728	0.6436	6.38%	5월~9월
	기타월		14.0029	1.7864	15.7893	14.861	1.7864	16.6474	0.8581	5.43%	4,10,11월
산업용	동절기		14.1091	0.8732	14.9823	14.9672	0.8732	15.8404	0.8581	5.73%	○ 계절요금 적용기준 - 동절기 : 12월~3월 - 하절기 : 6월~9월 - 기타월 : 4,5,10,11월
	하절기		13.1277	0.8732	14.0009	13.9858	0.8732	14.859	0.8581	6.13%	
	기타월		13.1845	0.8732	14.0577	14.0426	0.8732	14.9158	0.8581	6.10%	
연료전지용			12.3345	0.6027	12.9372	13.1926	0.6027	13.7953	0.8581	6.63%	
공동주택 등 열병합용			13.6254	1.1045	14.7299	14.4835	1.1045	15.588	0.8581	5.83%	
집단에너지 열병합용			13.6254	1.2563	14.8817	14.4835	1.2563	15.7398	0.8581	5.77%	
공동주택 열전용			12.9284	1.5465	14.4749	12.9284	1.5465	14.4749	0	0.00%	
집단에너지 열전용			16.1558	1.2563	17.4121	17.0139	1.2563	18.2702	0.8581	4.93%	
수송용			13.1010	0.6027	13.7037	13.9591	0.6027	14.5618	0.8581	6.26%	
사회복지 시설용	동절기		14.1091	0.8732	14.9823	14.9672	0.8732	15.8404	0.8581	5.73%	
	하절기		13.1277	0.8732	14.0009	13.9858	0.8732	14.859	0.8581	6.13%	
	기타월		13.1845	0.8732	14.0577	14.0426	0.8732	14.9158	0.8581	6.10%	

주) 1. 기본요금은 주택용을 대상으로 840원/월·가구로 적용함.
2. 가스사용 산정방법 : 기본요금+{사용량(MJ)×MJ당 요금(도매요금+소매공급비용)}+계량기교체비용(10등급 이상)
3. 집단에너지용의 경우 2003.1.1.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추가 열전용 보일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단가는 주택난방용을 적용함.
4.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동제에 따라 적용함.
5. 상기용도 외에 상호 협정요금 적용시 협정사항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함.
6. 발전용 계절별 차등제 폐지 : '21.5월부터 계절별 균등 요금 적용
7. 조정일시 : 2021. 9. 1. 00:00 사용분부터